

# 페루 헌법재판소

## 국 가 개 요

1. 국명 : 페루 공화국(Republic of Peru)
2. 수도 : 리마(Lima, 975만명)
3. 인구·면적 : 3,103만명(2017.7.), 1,285,220km<sup>2</sup>(한반도의 약 6배)
4. 공용어 : 스페인어, 케추아어
5. 1인당 GDP : 6,598불(2017년)
6. 독립일 : 1821.7.28.(스페인으로부터)
7. 정부형태 및 의회 : 대통령중심제, 단원제

### 1. 명칭 : 헌법재판소

-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Peru  
(Tribunal Constitucional del Perú)

### 2. 연혁

- 1993. 12. 31. 헌법 제정(헌법 제202조, 헌법재판소 권한 규정)
- 1996. 7. 헌법재판소 구성

### 3. 구성

#### 헌법재판관

-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(Presidente)을 포함한 재판관(Magistrado) 7인으로 구성
- 재판관은 모두 국회에서 재적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
- 재판관의 임기는 5년으로 연임 불가
- 재판관 자격 : 원 출생지가 페루이면서 페루내 거주하고 있는 45세

이상의 페루국민으로서

- 고등법원 판사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(최소 1년 전에 퇴직한 판사 또는 검사)
-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로 15년 이상 재직한 자
- 단, 징계 또는 해임된 법관, 변호사직 박탈된 자,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자, 파산 선고받은 자, 정치적 활동을 한 자는 재판관으로 선출될 수 없음

□ 헌법재판소 소장과 부소장

- 재판관 전체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
  - 투표에서 5표 이상 획득해야 함
- 임기는 2년이며, 이후 1년 연임 가능

□ 헌법연구원(Centro de Estudios Constitucionales)

- 헌법쟁점에 대한 연구·조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설립
- 헌법연구원의 주요기능
  -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 및 발간
  - 학술세미나, 강의, 워크숍 등 주최
-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중 1명을 헌법연구원장(Director General)으로 선출 (현재 연구원장은 Dr. Carlos Ramos Núñez 재판관)
- 원장실, 기획실, 집행위원회로 구성되며, 집행위원회 산하에 학술부, 연구부, 발간부가 있고, 일반 사무직원들이 있음

#### 4. 권한

□ 규범통제(Procesos de control normativo)

○ 위헌법령심판(Acción de Inconstitucionalidad)

- 법률, 위임입법, 법규명령, 조약, 국회규칙 등의 위헌여부 판단
- 대통령, 검찰총장, ombudsman, 법정 국회의원수 25%의 의원, 5000명 이상의 시민 서명, 지방조정위원회에 따른 지방의 대표, 전문직단체에서 청구 가능

○ 위헌규칙심판(Acción Popular) : 법원의 관할

공권력에서 명한 규칙, 결정, 명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개인이 청구

□ 헌법소원심판(Procesos de tutela de derechos)

1심 및 2심은 법원의 관할, 최종심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의 관할

○ 인신보호영장 절차(Proceso de Hábeas Corpus)

공권력이나 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개인의 자유(양심의 자유, 종교의 자유, 신체의 자유) 및 이와 관련된 기본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된 자, 기본권이 침해된 자의 대리인, ombudsman 등이 청구

○ 개인정보보호 절차(Proceso de Hábeas Data)

공권력이나 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구.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

○ 기본권보호 절차(Proceso de Amparo)

공권력이나 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다른 절차에 의해 보호되지 아니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개인이 청구

○ 이행 절차(Proceso de Cumplimiento)

법률을 준수하거나 행정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청구하는 절차

□ 권한쟁의심판(Proceso de conflicto competencial)

국가권력(입법, 행정, 사법) 간, 헌법기관(대법관자문회의, 선거관리위원회, 검찰청 등) 간, 국가권력과 헌법기관 간, 행정부와 지방정부 간, 지방정부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청구

## 5. 심리 및 결정

- 결정은 재판관 단순과반수에 의함. 다만 위헌여부심판의 경우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결정
- 법령에 관한 위헌판결은 관보에 게재하고, 해당 법령은 관보게재 익일에 효력 상실(소급효 없음)
-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국내적 구제절차를 거친 후 페루가 당사국인 국제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재판소나 국제기구에 제소 가능

## 6. 기타사항

- 재판관은 국회의원과 동일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하고, 겸직제한도 국회의원과 동일
-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관련하여 페루의 국가 의전서열은 ①3부요인, ②전직대통령, ③추기경 및 대주교, ④부통령, ⑤총리(헌법재판소장) 순임
  - 헌법재판소장의 의전서열은 총리(수석 장관)와 동격이나, 총리참석 행사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총리 다음 순서임

## 7. 연락처

### 헌법재판소

#### ○ 리마 사무소

- 주 소 : Jr. Ancash Nro. 390

Cercado de Lima

- 전화번호 : +51 1 427 5814

#### ○ 아레키파 사무소

- 주 소 : Calle Misti Nro. 102

Yanahuara - Arequipa

- 전화번호 : +51 54 253 448

#### ○ 홈페이지 : <http://www.tc.gob.pe>

### 헌법연구원

- 주 소 : Los Cedros Nro. 209

San Isidro - Lima

- 전화번호 : +51 1 440 3589

### ※ 출처 : 페루 헌법

페루 헌법재판소조직법

페루 헌법소송법

2006. 5. 1. 주페루 대사관 제공 자료

(2018. 2. 작성)